

## 한국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unicipal Policemen in Korea

김종수\* · 신승균\*\*

#### <목 차>

- |                     |                           |
|---------------------|---------------------------|
| I. 서론               | IV. 효율적인 자치경찰 교육훈련 모형의 제시 |
| II. 교육훈련에 관한 이론적 검토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설계 및 결과분석    |                           |

#### <요 약>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책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입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치경찰, 교육훈련, 지방자치, 신입교육, 특별사법경찰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학박사(제1저자)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제2저자)

## I. 서 론

경찰 창설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는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17대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5일 5대 국정지표 192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을 예고하였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sup>1)</sup>과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자치경찰제 도입의지를 완결 짓는 주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2월 15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자치경찰법(안)은 그 입법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은 2009년 1월 16일 법률적 효력이 소멸되는 한시법인 관계로 그 법적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염려스럽다.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효는 채 일년이 남지 않았다. 만약 시효만료까지 자치경찰법(안)의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가 상실된다면, 도입을 위한 그간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sup>2)</sup>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종합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가경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치안역량의 저변확대를 가져와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실현하고 주민 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충실한 민주적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

1)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제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의 자치경찰법안에서 제시하였던 17개의 시범실시 대상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약 30여 개의 시범자치단체로 확대 선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실험을 하겠다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안영훈, 2008: 2)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관련연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때에 자치경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로는 국가경찰의 교육훈련제도를 토대로 자치경찰에 적합한 교육훈련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기존의 자치경찰법(안) 및 도입논의는 제외하고 외국 자치경찰의 사례와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겠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법(documentary research)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각 구성요소들을 고찰하였으며, 보다 객관적인 실효성과 연구의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의 진행방식은 구조화된 면접지를 직접 면접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연구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이들의 태도와 흥미, 관심사 등의 응답을 상세히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II. 교육훈련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 교육훈련의 개념

조직의 발전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수준과 그 효과적인 활용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조직과 조직구성원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啓發)하고, 이것이 조직체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주입하거나 직무수행에 적합한 태도 및 가치관을 가지도록 개인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해, 박동서(2001: 212)는 교육이란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하며, 훈련이란 이러한 일반적·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직원이 자기가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는 데 그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것을 훈련이라는 용어에만 한정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널리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에도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현대사회에서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직무태도 등을 개발하고 촉진시키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신규채용자의 적응, 능력향상, 상위직 진출을 위한 대비, 그리고 업무변동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교육훈련은 신규채용자훈련, 일반재직자 보수교육, 감독자나 관리자훈련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방법은 전통적 강의식, 패넬·심포지엄·포럼과 같은 토론식, 사례연구, 역할연기,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OJT), 감수성 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 2. 교육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 1) 경찰교육훈련의 목적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목적은 경찰관 개개인으로 하여금 경찰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기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하위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경찰관 개인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경찰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경찰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경찰교육훈련은 장래 경찰조직의 인력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부인력의 신축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인사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경찰교육훈련은 조직 내에 만연해 있는 형식주의와 무사안일, 그리고 창조정신의 결여 등 관료제의 병폐를 시정할 수 있어서 상관의 통제업무를 줄일 수 있고, 동료들 간의 업무협조를 용이하게 한다.

넷째, 경찰교육훈련은 경찰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특히 자기실현욕구와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사회구조의 대규모화와 전문화, 그리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경찰교육훈련은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각종 사회현상과 범죄문제에 경찰공무원이 신속히 대응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변화대처능력,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의 요청으로 경찰교육훈련은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타 부처 구성원들보다 사회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고유한 영역인 경찰직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경찰업무는 경제적 여건과 사회환경의 복잡다양화로 인한 기술적이고 전문적 영역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교육훈련은 이러한 변화와 동반되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부수적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경찰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덟째, 경찰교육훈련을 통한 개인의 직무능력향상은 근무의욕을 높이고, 위탁교육 등을 통한 학위취득은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래의 경력발전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오석홍, 2000: 309; 신현기·이영남, 2003: 185).

## 2) 경찰교육훈련의 구성요소

경찰교육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경쟁력확보, 그리고 경찰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의 구성요소는 교육당사자와 교육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및 평가로 대별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의 당사자

교육훈련 당사자는 교육훈련시 필요한 인력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와 교육을 받는 객체를 말한다. 즉, 교육훈련체계에 있어서 교육당사자는 우수한 교수요원과 교육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수요원은 우선 지식의 전달자로서 교육생의 지식과 능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학습자의 행동 및 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자질문제는 교육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복영·류문무, 1996: 36).

교육훈련의 질은 교육생의 수준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교육훈련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질적 및 양적수준을 들 수 있다. 충분히 능력 있는 교수요원이 확보되었다면 우수한 양질의 교육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당사자인 우수한 교수요원과 양질의 교육생이 확보되었을 때, 교육훈련의 궁극적 목적인 전문경찰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꾀할 수 있다.

## (2) 교육훈련의 환경

교육환경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반 조건을 의미하므로 매우 다양한 사항들을 다루어야 한다. 첫째,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교육기자재 및 보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수준의 학급편성을 들 수 있다. 대개의 교육훈련이 그러하듯이 경찰관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과밀한 학급편성은 교육훈련의 질적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임경찰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교육생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조직구성원의 사기는 조직의 효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생에 대한 복지수준이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신임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보수문제는 경찰직에 대한 직업적 자긍심, 그리고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3)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내용이 교육생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교육훈련의 목표가 직무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향상, 태도의 교정이라고 할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강의·토의·사례연구·시찰 등의 교육방법이 효과적이며,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견습·순회직무실습·시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며, 태도의 교정을 위해서는 연기·토의·영화·사례연구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최종술, 2004: 77). 따라서 교육생에게 실제 전달되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찰업무는 그 특성상 강의실 교육보다는 실습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일선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당면할 문제들은 교육내용상의 대처능력 강화훈련이나 체험에 의한 경험으로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상황훈련, 사격훈련, 운전훈련 등의 실습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장실습을 통한 대처능력의 사전 훈련이다. 일선업무는 이론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기 때문에 범죄현장의 출동과 범인 제압과정 등을 사전에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습교육은 교육훈련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과목 및 배정시간과 관련한 문제이다. 어떠한 교과목이 각각 몇 시간씩 교육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다.

#### (4) 교육훈련의 과정 및 평가

현행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크게 3개 과정, 즉 신입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황우 등, 2003: 169). 신입교육과정의 내용은 경찰의 목적과 기능, 경찰조직의 구조와 역할, 각 부서의 업무상황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이해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문서처리법, 무기 및 경찰장구의 사용 및 손질법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의 교육과 실무에 필요한 법률과 규정과 범인의 체포, 집단사태의 진압, 작전임무수행을 위한 강인한 체력단련, 자위능력 제고를 위한 호신술, 체포술 등의 무술훈련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문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하여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사례 위주의 토론교육 강화, 그리고 교육생들의 체험을 기초로 한 참여식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최중술, 2004: 89).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교육훈련의 결과에 대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평가는 교육훈련 전반의 내용을 고려하여 과정에 대한 개선, 교육당사자에 대한 개선, 교육방법 등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평가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교육훈련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훈련이 의도한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차기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효과적인 교육훈련의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이다(최중술, 2004: 85).

#### 3)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신규채용자 교육훈련(academy training)은 적응교육훈련(introduction or orientation) 이라고도 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최초의 교육훈련이다. 이러한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은 신입경찰관으로서 알아야 할 조직의 문화, 규범, 직업윤리 등의 기초 소양교육과, 담당할 직무에 대한 성격,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직무적응에 필요한 요소들을 안내하고 습득하는 과정이다. 즉, 경찰관서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주입시키고, 경찰업무에 요구되는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입경찰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Leonard와 More(1993: 310)는 신규채용자 교육훈련에 대해 형사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능력, 그리고 대민봉사자로서의 갖

추어야 할 자질과 실행능력을 고루 겸비한 직업경찰관을 탄생시키기 위한 제반의 기초적 교육훈련이라고 하면서, 신입경찰관은 이러한 과정 후에는 범죄와 투쟁하고,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경찰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신규채용자 교육기관으로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종합학교가 있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기초 또는 적응훈련으로서 신입경찰관에게 담당할 업무에 대해 미리 적응시키는 신입교육과정으로 순경계급에 대해 24주간의 과정을 이수케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으로는 일반 남자·여자순경, 101경비단 과정, 사이버범죄수사과정, 신입교육 미 이수자 과정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신입순경의 단계별 교육과정은 <표 2-1>과 같다.

<표 2-1> 신입순경 교육과정

과정	기간	교육내용
1단계(정신·체력 단련기)	3주간	집중적인 정신교육 및 체력단련 무도, 체포술, 제식, 산악훈련 등
2단계(실무능력 배양기)	12주간	법률 및 외근업무에 필요한 실무교육
3단계(현장실습기)	4주간	경찰서 및 지구대 치안현장 체험 지구대 경찰관과 합동근무로 실무습득
4단계(종합정리기)	5주간	현장실습내용 사례발표 및 분임토의 실무과목별 종합정리 및 평가

경찰종합학교에서는 간부후보생 시험합격자에 대한 초급간부 신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2개월간 경찰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정립 및 지휘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전문적인 경찰간부의 육성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전환으로 실제 문제해결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단계별 교육과정은 <표 2-2>와 같다.

<표 2-2> 신입 초급간부 교육과정

과정	내용
1단계(4주)	기본적응교육
2단계(15주)	기본소양 및 기본실무교육
3단계(18주)	실무전문화교육
4단계(15주)	지휘능력배양교육



신임경찰관의 교육훈련에 대해 Niederhoffer(1967: 45)는 “신임경찰관과 시민 세계를 연결시키는 끈은 경찰학교에 연결되어 있으며, 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관은 경찰직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Bayley(1993)는 이러한 “적응과정으로서의 신임교육훈련은 경찰관들이 사실상 공식적인 정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한계 및 규칙을 배울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중심부분이다.”라고 하여 신임교육훈련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 3. 각국의 자치경찰 교육훈련

#### 1) 미국

미국경찰은 50개의 독립주를 가진 연방국으로서 법집행기능이 여러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경찰은 광역적 법집행 기관인 주경찰과 연방경찰이 있으며, 도시의 구성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경찰의 핵심은 자치경찰인 도시경찰이며, 이는 미국 법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국경찰의 조직체계는 도시 치안행정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체의 경찰조직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도시경찰<sup>4)</sup>로 알려진 LA시 경찰국과 뉴욕시 경찰국의 자치경찰 교육훈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LA시 경찰국의 경우에는 매년 평균 720명의 신임경찰관을 선발하여 교육시킨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경찰신임교육은 4개월 내지 6개월이며, 교육방식은 대부분 입교후 단체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학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교육훈련은 학교내 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성되며, 신임교육 후 6개월 내지 3년의 시보기간 동안 선임경찰관에 의한 개별지도가 이루어진다.

3) 미국의 자치경찰은 소속경찰관이 10명 이하인 경우부터 3만 명이 넘는 경우까지 다양하며 현재 미국에는 1만 7천개가 넘는 경찰기관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경찰청(NYPD)의 경우 인구 약 8백만 명의 정규경찰관은 약 4만 명이 5개 버로우와 59개의 커뮤니티를 관할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경찰청(LAPD)의 경우에는 9,300명의 정규 경찰관이 370여만 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미국의 법집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모두 도시 경찰에 관한 내용들이며 연구자료나 통계자료 또한 특정 도시, 예를 들면 New York, Chicago, L.A, Philadelphia, Boston, 그리고 Washington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중수, 2006: 75).

4) 도시경찰은 지방자치 도시인 시(city), 법인격을 가지는 타운(incorporated town), 빌리지(village) 또는 버로우(borough)의 경찰을 총칭한다. 도시경찰은 대개 시경찰청(police department)으로 지칭되며, 다른 경찰기관보다 훨씬 더 복잡적이고 처리사건이 많으며, 광범위한 법집행과 질서유지 및 봉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경찰의 특징으로 경찰의 감독자(supervisor)로서 민간인을 두어 경찰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책임있는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써 뉴욕시의 경우 시장이 민간인 경찰청장(police commissioner)을 1명 임명하여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LA시 신입자치경찰 교육은 28주 동안 1,064시간가량 실시된다. 법집행관 교육 및 훈련과 기준에 관한 주위원회(The State Commission on Peace Officers Standards and Training: POST)에서는 수업시간 중 664시간을 캘리포니아 주 경찰관 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state's basic course)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나머지 400시간은 LA경찰국에서 실시하는 특별교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 특별교과목에는 정책(policies), 절차(procedure), 기술습득 강화(skills enhancement)가 포함되어 있다(임준태, 2003: 335).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방법은 강의와 토론, 시청각 교육, 소그룹 훈련, 역할 학습,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신규임용 교육훈련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1단계(1주~18주)는 다양한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법률, 인간관계, 스페인어, 신체적 단련, 호신술 훈련 등이 실시된다. 둘째, 2단계(19~25주)는 자동차 운전, 자동화기 사용법, 전술, 시나리오를 통한 훈련과 시험, 인간관계 훈련 등이 실시된다. 셋째, 3단계(26~28주)는 교육평가를 포함하여 야외훈련과 졸업식 연습 등이 실시된다.

뉴욕시 경찰국의 경우에는 약 37주간의 교육과정을 경찰학교에서 남·녀 신입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30명씩 1개반으로 편성되며, 담당 교관은 경사급 경찰관이 맡고 있다. 교육기간은 대개 7개월 정도이며, 6개월 동안은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개월은 지구경찰서에서 실습한다. 교육 및 수업시간은 경찰학 관련 90분, 법률분야 90분, 행태학 90분, 물리교육 90분씩 실시된다(임준태, 2003: 336).

## 2) 일본

일본은 패망 이후 미군정의 상륙과 더불어 전통적인 국가경찰의 조직체계를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 단위의 분권적 자치체경찰 조직으로 대대적인 변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오랜 국가경찰체제의 전통으로 인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적응과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이르는 부락단위의 지역사회까지는 효과적인 치안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다시금 국가경찰제가 부활하게 되었고, 근대에 들어 정부의 경찰개혁 의지와 국민적 요구인 자치경찰제를 수용하기 위해 현재의 경찰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자치체 경찰인 동경도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로 구성된 일원적 체계이며, 경찰관리기관으로 국가와 자치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자치체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은 도도부현 지사의 소할하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두어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를 관리하며 경시청장과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방면본부와 시경찰부, 그리고 경찰서를 지휘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sup>5)</sup>

일본에서의 자치경찰은 이러한 도부현과 시정촌에 근무하고 있는 경시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의미한다. 국가공무원인 국가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법이 적용되고, 지방공무원인 지방경찰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법이 적용된다.

(1) 신입교육훈련

신입경찰 교육훈련은 새로이 채용된 순경계급에 대해 실시되는 기초적인 교육훈련을 뜻한다. 순경급 채용자들의 학력에 따라 신규임용 교육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고졸지원자의 경우 초임과 10개월, 경찰서 실습 8개월, 초임총합과 3개월로 총 21개월에 이르고 있으며, 대졸지원자의 경우 초임과 6개월, 경찰서 실습 7개월, 초임총합과 2개월로 총 15개월에 이르고 있다.

<표 2-3> 신입순경 교육과정 및 기간

구분	교육과정	고졸지원자	대졸지원자
도도부현경찰학교	초임과	10개월	6개월
경찰서실습	외근실습	2개월	2개월
	수사실습	2개월	2개월
	교통실습	1개월	1개월
	외근실무실습	3개월	2개월
도도부현경찰학교	초임총합과	3개월	2개월
교육기간 합계		21개월	15개월

자료: 임준태(2003: 324)의 재구성.

<표2-3>과 같이 일본경찰의 교육과정은 도도부현 경찰학교에서 실시되는 초임과, 각급경찰서에서 실시되는 실습교육, 도도부현 경찰학교에서의 초임총합과로 이루어져 있다. 신규채용된 순경급 경찰관은 도도부현 경찰학교의 초임과에 입학하여 초임교양을 받는다. 초임교양은 전원 기숙사생활을 원칙으로 단체생활을 한다.

대개 전반기는 기초교육기간으로 하고 훈육이나 생활지도 등에 의한 정신교육과 술과에 의한 육체적 훈련을 중점적으로 행하여 경찰관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체득시킴과 동시에 법학 및 실무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경찰학교에서는 신입경찰관의 교육훈련 중에서도 특히 채용시간교육을 중요시하는데, 신입경찰관에 대해서 경찰관으로서 견비해야 할 법률지식이나 기능 등을 몸에 습득하게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풍부한 인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황우 등, 2006:

5) 일본에는 약 3,3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47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664개이고 도쿄 특별구가 23개, 그리고 정촌이 2,573개에 이른다.

420).

이러한 초임교양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경찰서에 배치되어 파출소 등지에서 직장 실습을 체험하게 되며, 마지막 과정으로 초임총합과에 입교하여 초임총합교양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일본경찰이 타부처 공무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경찰관이 법집행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직책을 담당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훌륭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임준태, 2003: 324).

## (2) 간부교육훈련

간부교육이란 각급 간부 승진자나 각급 간부 승진후보자인 경찰관 및 국가공무원 채용 상급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채용된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간부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뜻한다. 간부교육은 각급 간부의 단계에 부응하여 필요한 학과 및 실무를 습득시켜 부하를 감독함에 있어 적절한 인격·식견·능력을 양성하는 경찰 간부교육훈련으로서, 관구경찰학교·도경찰학교 등에서 실시한다.

초임간부교육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졸업자를 처음부터 간부로 채용하여 행하는 일종의 연수라고 할 수 있으며, 장래의 상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 경찰관으로서의 초임교육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교육을 받는 간부는 주로 대학 졸업자이므로 교육과목이 축소되며, 실무와 술과의 습득에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초임교육의 종료 후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을 거친 순사에 대해 행하는 기초적인 교육훈련인 현임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이황우 등, 2006: 420).

## 3) 스페인

스페인인 마드리드를 수도로 17개의 자치주(comunidad autonomia)와 52개의 도(provincia) 및 그 아래 8,101개의 시(municipio)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은 뚜렷한 지방적 특색을 갖고 있다. 스페인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경찰조직은 중앙정부에 속한 국가 중앙경찰,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주경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이 있다(신현기, 2003: 191).

스페인의 경찰조직은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되며, 국가경찰은 국가일반경찰(cuerpo nacional de policia)과 국가군경찰(guardia civil)로 편성된다. 자치경찰(local policia)은 기초자치단체에 창설되어 있으며, 일부 주(까탈루니아, 바스크, 나바라)에만 주(州)경찰을 창설하였다. 까탈루니아와 바스크 지역은 국가경찰을 대체하는 주경찰로 편성되어 있으나, 나바라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치경찰과 같이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구성된 주경찰을 운영하고 있다.<sup>6)</sup> 자

치경찰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광역자치경찰과,<sup>7)</sup>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진 민간 성격의 무장기관인 기초자치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스페인의 자치경찰의 총 인력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며, 1,700여개 단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20% 이상이 자치경찰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자치경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신현기, 2007: 112).

마드리드주의 자치경찰 교육훈련을 보면 주경찰연수원과 시립경찰학교를 운영하여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마드리드주 치안연구소(ISES)를 통해서도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sup>8)</sup>. 교육과정은 신규채용자 과정, 승진자과정, 전문과정으로 구분되어 마드리드주 지역의 자치경찰이 설치된 시정부로부터 위탁교육을 시행한다.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신규채용자들은 마드리드주 자치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교과내용은 자치경찰조정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마드리드주가 결정하며, 직무교육과정은 0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하며 졸업에는 최소 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마드리드주 지방경찰조직 시행령 제34조).

또한, 모든 신규채용자들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실습기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습기간 중의 평가는 점수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내무부과위원장 또는 경찰국장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지며 평가방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공개채용과 신입교육과정을 모두 통과한 신규채용자들은 최종적으로 공개경쟁시험점수와 직무교육과정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sup>9)</sup>

6) 1986년 3월 경찰조직법(Ley Organica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del Estado)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공안전에 관한 보장 임무는 국가에 있으며, 주 등 지방정부는 이에 공동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17개주 가운데 7개 주의 법규에 주경찰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3개주인 카탈루냐, 바스크, 나바라에만 주경찰을 설치하고, 나머지 4개주는 국가경찰이 주경찰 기능을 대리하고 있다. 주경찰이 창설되지 않은 주정부는 주정부내에 치안관련부서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 경찰에 대한 선발, 교육, 재정지원, 정보공유, 장비기준설정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 자치경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이 헌법상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나, 자치경찰을 조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및 제47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경찰을 통하여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능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조직상으로는 내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다.

8) 마드리드주 치안연구소(ISES)는 시민안전 및 치안교육을 위해 법률 15/2000호(12월 21일)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2004년 교육인원은 81개 자치단체의 2,345명이며, 치안연구소는 경찰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데 전국경찰체전과 국립치안연구소 주관의 철인2종 경기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치경찰간부를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치안학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2004년부터 부여하고 있다(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6: 34).

9) 채용의 최종 평가는 공개경쟁시험점수와 직무교육과정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계를  $[(OP \times 0.40) + (CS \times 0.60)]$ 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결정하게 된다. OP는 공개경쟁시험점수이며, CS는 직무교육 성

### III. 연구설계 및 결과분석

####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의 질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는 연구자가 면접대상자의 경험과 감정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in-depth data)를 얻기 위해 참여자의 반응을 면밀히 조사하고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특히 심층면접을 위해 사전에 면접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된 면접지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참여자들의 응답을 구하는 구조화된 면접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3-1> 면접지의 구성

영역	질문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1. 자치경찰 신입교육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예견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① 교육훈련 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와 교육인원의 배정 1-② 기존 국가경찰 교육시설을 공유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2. 재정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내 자치경찰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3. 지역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자치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4. 신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주경찰 양성 및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4-① 특사경 등 자치경찰 전문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교육의 필요성 4-② 신입교육 중 무도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5. 자치경찰 수행사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5-① 자치이념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5-② 대인화법 및 대민서비스 교육과정의 개설여부

적을 의미한다(마드리드주 지방경찰조직 시행령 제51조).

면접기간은 2008년 1월 18일부터 동년 2월 29일까지 33일간 면접일정에 따라 계획 하에 실시하였다. 면접은 주로 강의와 업무가 없는 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면접 참여자와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참여자는 관련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면접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각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자치경찰 및 자치행정, 지역사회경찰 활동 등의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교수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 중인 정책실무자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고, 다수의 연구경험이 있으므로 본 면접조사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 3-2> 면접참여자의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

항목	구분		면접자수(%)
성별	남		6(75%)
	여		2(25%)
연령	40대		4(50%)
	50대		4(50%)
지역별	수도권	서울	2(25%)
		경기	2(25%)
	호남권	전북	2(25%)
		전남	1(12.5%)
	영남권	대구	1(12.5%)

면접자료의 수집방법으로는 심층구조화 면접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면접시 2~3개 질문으로 간단히 진행하지 않고, 면접지를 작성하여 개별 면접참여자와 장시간에 걸쳐 폭 넓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통해 응답을 구하였다. 또한 질문방식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적용하여 면접지의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면서 심층적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은 참여자의 연구실 혹은 집무실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회 90분의 정도의 면접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시작 전,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면접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응답에 대한 비밀 보장 및 면접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모든 참여자의 면접내용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숙독한 후에 면접 내용별로 구분하여 주요어를 추출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을 추가했다. 면접조사 결과분석에서는 면접참여자의 응답내용을 발췌·인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결과분석

경찰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접참여자들은 기존의 국가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면접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국가경찰 신입교육훈련은 협소한 시설에 많은 인원을 수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주경찰 양성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시간 때우기 식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교육훈련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내 치안수요와 자치경찰대의 규모,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내에 독자적인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를 것임을 지적하였다.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간의 균형적 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더욱이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광역자치경찰체제로 정착이 될 경우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위탁하여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방안과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셋째, 지역 대학을 자치경찰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치경찰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민간교육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교육을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대학에 위탁하는 것은 자칫 자치경찰의 업무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학위취득 과정이라든지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여 지역대학과 일정부분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신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 교육인력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특사경 사무수행 등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교수와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국가경찰



의 시설과 인력에 의한 교육훈련, 지역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교수에 의한 교육훈련, 일반공무원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훈련의 3원체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치경찰 수행사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대민서비스 및 봉사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치이념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안정된 경찰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치경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V. 효율적인 자치경찰 교육훈련 모형의 제시

###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의 조성

유능한 인적자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신입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효과적이며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신입경찰공무원에게 있어서는 교육훈련의 의미가 생애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과정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신입 국가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군대식 문화의 잔존, 실무에 충실하지 못한 교과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신입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훈련 환경의 조성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성공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이 되려면 우선 전문성을 갖춘 자치단체만의 독자적 교육훈련 기관이 필요하다. 즉, 광역자치단체별 자치경찰 교육기관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신입교육훈련은 국가경찰에 위탁하되 특별시와 광역시별로 자치경찰 수습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설확보와 교육인력의 확보를 위한 많은 지원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의 특성상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입교육훈련의 공통 집체교육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경찰학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보아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설치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경찰 교육기관의 활용과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지역대학의 시설 및 교수요원의 활용

기존의 현직경찰관을 교수요원으로 한 교육훈련은 많은 양질의 지식과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으며, 경직되고 일률적인 교육방법으로 인해,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입 자치경찰관에게 폭넓은 시각과 개방적 사고를 배양시키고 많은 전문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경찰 관련학과 교수를 자치경찰 교육훈련 요원으로 선정하거나, 지역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인프라의 확충과 자율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교육방식, 그리고 실무와 연계된 교과과정, 훌륭한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유능하고 훌륭한 민주 자치경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관련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경직되고 폐쇄적이지 않은 열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개월간의 신입교육 기간 중 집체교육 기간을 4개월로 하고, 나머지 2개월은 지역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이는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산학협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체제를 경찰교육기관, 자치경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지역대학, 일반공무원 교육기관의 3원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신입 자치경찰 교육훈련기간 중에서 실무교육은 국가경찰에서 실시하고, 소양과목과 전문과목은 지역대학의 경찰 관련학과에 위탁하여 이수하며, 공직윤리 및 봉사교육은 일반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가 없는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신입교육훈련기간 종료 후에도 연계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

최근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정부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는 자치경찰 업무수행 방식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게 되어 민주경찰로서의 위상과 자세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적·정치적·시대적 요구에 의한 경찰활동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자치경찰이 지향해야 할 절차와 방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

르다. 국가일반통치권의 작용이며 경찰의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본질적 자유의 침해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법권을 발동하며,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행정경찰 작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모집 및 채용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국가경찰과는 다른 독자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입 자치경찰의 교육과정(안)은 <표 4-1>과 같다. <표 4-1>의 교육과정은 중앙경찰학교의 6개월 신입순경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자치경찰에 부합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표 4-1> 신입 자치경찰 교육과정(안)

분야		교과목	기간
기본 교육	소양 과목	공직윤리관 및 시민정신 교육(직업윤리 포함)	34시간(3.7%)
		경찰서비스 및 봉사교육(각종 민원상담 포함)	42시간(4.6%)
		양성평등 의식교육(인권보호 포함)	34시간(3.7%)
		주민대응요령 교육(친절교육 포함)	42시간(4.6%)
소계		4개 과정	152시간(16.6%)
전문 교육	법률 과목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범죄수사 제외)	71시간(7.85%)
		경찰행정법(집회 및 시위 관련법 포함)	80시간(8.7%)
		청소년 보호 관련법(청소년 성, 학교폭력 포함)	80시간(8.7%)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및 조사 포함)	71시간(7.85%)
		특별사법경찰사무(수사경찰 활동 포함)	80시간(8.7%)
소계		5개 과정	382시간(41.8%)
실무 교육	기초 과목	체력단련(무술, 체포술 포함)	71시간(7.7%)
		자치경찰활동(지역사회 경찰활동 포함)	80시간(8.9%)
		행정경찰활동(행정법규 위반사범 단속 포함)	80시간(8.9%)
		경비경찰활동(요인경호 및 행사지원 포함)	71시간(7.7%)
소계		4개 과정	302시간(33.2%)
기타 교육	종합 평가	현장실습(체험) 및 동료(후견인)교육	43시간(4.7%)
		종합토론 및 분임토의(교육평가)	34시간(3.7%)
소계		2개 과정	77시간(8.4%)

신임 자치경찰의 교육과정은 총24개 과정에 913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신임 자치경찰 교육과정(안)을 보면 기본교육은 4개 과정에 152시간, 전문교육은 5개 과정에 382시간, 실무교육은 4개 과정에 302시간, 기타교육은 2개 과정을 77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적용은 국가경찰 전직자들을 제외되고 신규채용된 신임자치경찰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신임순경 교육과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교육과정에서 소양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시민의 자치권을 위임받은 자치경찰로서의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교육, 시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봉사교육, 시민의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을 위한 의식교육, 지역 내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민주적 봉사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로의 위상정립을 위한 주민대응요령 등의 소양과목을 기본교육 기간 동안 실시한다. 이는 전체 신임순경 교육훈련 과정에서 16.6%를 차지한다.

지역사회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다 전문적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 기간에는 법률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의 최고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원리와 일반이론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검토하며, 자치경찰이 가장 중요시해야할 시민기본권의 내용, 성격, 효력, 한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전통적 경찰업무의 핵심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형사절차법의 기초이론 및 수사절차를 포함한 소송절차상의 내용을 습득한다.

특히 자치경찰사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와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 소년보호, 선도 및 교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경찰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 특히 지역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여건과 교통시설,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숙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단속요령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리기능을 강화한다. 법률과목으로 구성된 전문교육과정은 전체 교육훈련에서 41.8%를 차지한다.

실무교육과정에서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한다. 체력단련 교육은 경찰직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의 함양을 위해서, 반복적인 수련을 통하여 장래 경찰업무 수행시 예견되는 범죄자의 공격과 저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직무수행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필요한 신체의 단련과 경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범인으로부터 공격 또는 저항을 받을 경우를 예상하여, 상대에게 최소한의 타격을 주어

안전하고도 능률적으로 범인을 제압 및 체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치경찰활동 교육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의 시대가 열리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육생들이 경찰제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및 자치경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자치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이론적·실무적으로 체득한다. 또한 경찰과 지역사회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하여, 양자 간의 갈등과 긴장의 해소방안과 바람직한 경찰지역사회관계의 설정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한다.

특히 자치경찰의 본연적 임무가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요소를 발견하고 억제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확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리절차와 규범을 숙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목적을 침해하는 공공위반상태에 대한 경찰권의 작용·유형 및 그 근거 법제와 한계 등을 이해하고, 지역내 소규모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관리와 대응, 각종 행사경비, 혼잡경비 등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숙지하기 위해 경비경찰활동 교육을 실시한다. 실무교육과정에서 기초과목은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전체 교육과정의 33.2%를 차지한다.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현장실습 및 동료교육을 통해 신입교육과정에서 숙지하고 체득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적응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장실습시 반드시 교육생과 동료 또는 후견인 경찰관이 동행하여 조언 및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미국 자치경찰의 현장경찰훈련프로그램(field training officer programs: FTO)에서 착안한 것이다.

수습경찰관에 대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경찰훈련프로그램은 미국 자치경찰을 비롯한 주경찰의 사법경찰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나 주민의 불만 등에 수습경찰관이 적절히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허경미, 2005: 738).

<표 4-2> FTO의 단계별 진행과정

phase	method	FTO
phase I	28 days: 90% training/ 10% evaluation	FTO 1
phase II	28 days: solo performance	FTO 2
phase III	28 days: 90% evaluation/ 10% training	FTO 3
phase IV	14 days: one man car	back to FTO 1
phase V	14 days: traffic division	FTO 1
phase VI	14 days: community oriented policing	FTO 1

자료: 허경미(2005: 738)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장경찰훈련프로그램은 모두 여섯 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첫 번째 단계(phase I)는 28일간 실시된다. 이 단계에서는 훈련경찰과 수습경찰이 함께 근무하며, 90%는 훈련경찰의 훈련으로 그리고 10%는 평가기간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단계(phase II) 역시 28일간 실시되며, 수습경찰 단독으로 근무한다. 이 기간은 첫 번째 단계에서 훈련받은 내용의 업무가 집중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phase III) 역시 28일간 실시되며, 훈련경찰과 수습경찰이 함께 근무하고 90%는 훈련경찰의 평가로, 그리고 10%는 훈련으로 진행된다.

네 번째 단계(phase IV)는 14일간 실시되며, 이 단계에서는 훈련경찰과 수습경찰이 함께 탑승하되 훈련경찰은 오로지 평가만을 위하여 동승할 뿐이다. 특히 주어진 업무를 수습경찰이 단독으로 수행하며 훈련경찰은 이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다섯 번째 단계(phase V)는 14일 간이며, 수습경찰이 주로 자동차범죄 사건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도 훈련경찰은 오로지 평가만을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여섯 번째 단계(phase VI)는 수습경찰이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경찰대상인 시민의 불만과 고충을 청취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감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현장경찰훈련프로그램은 수습경찰관에게는 사전에 현장 감각을 익히고,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며, 노련한 선배경찰관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은 단순한 시보기간의 수습과는 다르며, 신규배치 이후에 일정한 적응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훈련과정을 통해 선배경찰관은 다양한 사안별로 수습경찰관의 업무수행 태도와 법규준수여부 등을 지도·관찰하고, 이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보고서는 인사권자의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독자적인 활동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법규위반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와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Bennet & Hess, 1996).

마지막으로 신입교육훈련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종합토론 및 분임토의를 실시한다. 이러한 종합평가 단계는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8.4%를 차지한다.

이처럼 신입 자치경찰 교육훈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신규채용된 자치경찰의 능력개발과 더불어,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훈련은 지역사회 자치경찰관으로써 효과적 업무수행에 목적이 있는 만큼,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연구·개발인프라가 불충분한 상

태이므로,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관련 학회, 경찰청 치안연구소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치경찰 수행사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1991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체제 출범 후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그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권력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며,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각종 범죄문제, 지역이기주의와 물질만능풍조의 만연,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잦은 대규모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우리사회의 치안질서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찰체제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경찰제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을 통한 거버넌스적 관점의 통치구조가 강조되고 있고, 지방분권화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자치행정과 자치치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의 정책적 경향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민의 특성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자치행정 및 자치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의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방분권사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정책적 추세와 정부의 의지를 재조명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더디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회에 발의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더불어 자치경찰제의 정착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범위를 좁히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데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효율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유능한 인재를 조직목적에 부합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경찰상에 적합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

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책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입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모형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과 시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실증적 연구가 향후 더 나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복영·유문무(1996).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성호(2004).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나”. 「자치뉴스」 통권 제12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김종수(2006). 「자치경찰의 신규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서(2001).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도순(1992).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신옥순(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신현가·이영남(2003). 『경찰인사관리론』. 서울: 법문사.
- 신현기(2007). 『자치경찰론(개정3판)』. 서울: 웅보출판사.
- 안영훈(2004).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증거들”. 「동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안영훈·양영철(2008).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양영철·이기우(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보고 및 지방자치 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전략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서울행정학회.
- 이종배(2005a).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 \_\_\_\_\_ (2005b).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자치경찰법안공청회 자료집.
- 오석홍(2000). 『인사행정론(신정판)』. 서울: 박영사.
- 이황우·김진혁·임창호(2003). 『경찰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 이황우·조병인·최응렬(2006). 『경찰학개론(전정판)』.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준태(2003). 『범죄통제론』. 서울: 좋은세상.
-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6). 『유럽자치경찰제도』. 서울: 행정자치부.
- 최종술(2004). 『경찰인사관리론』. 서울: 대왕사.
- 허경미(2005).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법과정책연구」 5(2), 한국법정책학회.
- Alpert, G. P., & Dunham, R. G.(1997). Policing urban america, 3rd ed.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 Bennet, W. W., & Hess, K. M.(1996). Criminal Investigation, St. Paul, MN: West Publishing.

- \_\_\_\_\_ (2001).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law enforcement. Belmont, CA: Wadsworth.
- Leonard, V. A., & More, H. W. (1978). Police Organization.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 Niederhoffer, A. (1967). Behind the Shield: The Police in Urban Society, Garden City, N.Y.: Anchor Books.
- Wilson, O. W., & McLaren, R. C. (1972). Police Administration,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http://www.wgmp.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unicipal Police in Korea**

Kim, Jong-Soo · Shin, Seung-Gyoon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Korean municipal police operating system which is certain to be introduced to the nation,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new appointment system presented herein from the viewpoint of police and experts in related areas, thus contributing to hav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place stabl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ocess of a new appointment.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it could be concluded that:

First, it must be executed the adequate education and training to foster needed democratic policemen considering regional realities and different localities. Second, it must be included the open environment to train competent policemen in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it needed to utilize the educational facilities and professor of regional universities. Third, it must be needed to secure independent education and training different from National Policemen Education. To do this, it must be developed curriculum fit for characteristics fo the municipal police system.

Key Words : Municipal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Locality self-government,  
New appointment education, Special judicial police